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44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박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완석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7.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1. 9. 17. 접수 제950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21. 9. 10.경 D조합로부터 9억 3,6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E조합로부터 10억 9,1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21. 9. 17.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E조합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② D조합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E조합로, 우선수익금액을 13억 920만원으로,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D조합로, 우선수익금액을 11억 2,320만원으로 하는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21. 10. 20.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게 담보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카단11672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날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는 2023. 1.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카소10003), 위 법원은 2023. 1. 1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제소명령 송달일로부터 21일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제소명령을 하였으며, 위 제소명령 등본은 같은 달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23. 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4.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카단107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주장하고 소명까지 하였다면, 늦어도 위 가처분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4608 판결 참조).

나. 원고가 2021. 10. 20. 피고를 상대로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담보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같은 달 2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카단11672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신청할 당시인 2021. 10. 20. 무렵에는 C과 피고 사이의 담보신탁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21. 10. 20.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3. 2. 7.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최재원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69,549㎡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대 2500㎡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500 분의 80,0538

2.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69,549㎡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대 2500㎡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500 분의 80,0538

3.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권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69,549㎡

권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대 256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566 분의 80,0538



